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842
----------	-----

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시립브릿지상담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숙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1.1 ~ 2015.12.31)

○ 위탁업무

- 노숙인 상담 및 일시보호, 샤워·세탁·이발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3.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민간위탁 지속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가. 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개요

○ 본 동의안은, 상기 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 운영 법인의 위탁 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동 상담보호센터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 동안에도 민간위탁 형태로 지속 운영하고자, 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상기 상담보호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숙인 상담 및 일시보호, 샤워·세탁·이발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상기 상담보호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노숙인 상담 및 일시보호,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거리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노숙인 재활·자립·자활 프로그램 및 적정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상기 노숙인 복지시설(상담보호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단일 서비스에 대한 구매계약 보다는 공공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각종의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짐.
- 이처럼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경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달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성 제고, 정부팽창 방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의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위탁의 제반 효과 중에서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이 가장 주된 관심의 초점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공급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며, 그 이유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휴먼서비스의 특성상 그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투입활동과 성과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상기 상담보호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가 향후 3년 동안에도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상기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운영에 있어 그동안 관련 전문 민간 영역에서는 지역사회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 파악에 관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숙인 상담 및 재활 관련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 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숙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한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42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브릿지상담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숙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상담보호센터(2002.11.19 개원)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13번지
- 시설규모 : 대지 175.80m², 건물 562.82m²(지하 1층, 지상 4층)
- 이용정원 : 150명(현원 500명) - 종사자 12명
- 이용대상 : 거리노숙인
- 위탁법인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 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3년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1.1 ~ 2015.12.31)
- 위탁업무
 - 노숙인 상담 및 일시보호, 샤워·세탁·이발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
 -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 주거 및 일자리 연계 등
- 소요예산 : 660,000 천원 (20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등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및 제6조 제1호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5. 1. 1 ~ 2006. 12. 31(2년, 재단법인 구세군유지)
 - 2차 : 2007. 1. 1 ~ 2009. 12. 31(3년, 재단법인 구세군유지)
 - 3차 : 2010. 1. 1 ~ 2012. 12. 31(3년, 재단법인 구세군유지)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운영은 노숙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는 사업으로 상담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입소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 제2항
 - ②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갱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